

		보 도 자 료		
		배포일시	2019. 5. 31.(금) 총 4매(본문4)	
담당 부서	공공주택 지원과	담 당 자	• 과장 최아름, 사무관 곽인영 · 박선영 · 홍승희, 주무관 박세연 · 전성이 • ☎ (044) 201-4479, 4535	
보 도 일 시		2019년 6월 3일(월) 조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 ※ 통신·방송·인터넷은 6. 2.(일) 11:00 이후 보도 가능		

보호종료아동 주거지원 문턱은 낮추고 지원은 더하고 우선지원, 거주기간 연장 등 매입전세임대 업무처리지침 개정안 행정예고

- 보호종료아동*의 공공임대주택 입주자격을 개선하고 입주 우선순위를 부여하는 등 제도개선을 통해 취약한 주거여건에 놓인 보호종료아동이 주거 지원을 보다 쉽게 받을 수 있게 된다.

* 「아동복지법」 제16조에 따라 가정위탁, 아동복지시설 등에서 18세에 달하거나 보호목적이 달성되어 퇴소하는 자('18년 2,606명, '13~'17년 약 1.25만명)

[주요 개선사항 및 사례]

① 입주자격 개선 : 소득 자산 기준 삭제

- (개선전) 2년 전 보육원 퇴소후, 청년 매입임대주택 입주를 알아보는 A씨. 부모의 소득·자산 검증을 위한 부모동의서를 제출해야 하나 연락 두절로 입주신청을 포기
- ⇒ (개선후) 신청자가 무주택자인지 여부만 확인되면 입주대상자로 선정 가능

② 입주자 선정 방식 개선 : 동 순위내 경합시 추첨 → 우선순위 부여

- (개선전) 만 18세가 되어 시설에서 퇴소 예정인 B씨. 매입임대주택 입주를 희망하지만 추첨에서 탈락하여 다음 모집 시까지 3개월을 기다려야만 하는 상황
- ⇒ (개선후) 보호종료아동에 청년 매입임대주택 우선지원. 입주시간 단축 가능

③ 지원 기간 확대 : 6년 → 최대 20년

- (개선전) 시설 퇴소 직후 LH 전세임대 지원을 받아 6년 째 거주 중인 C씨. 임시직으로 일하며 임용고시를 준비 중이나, 다음 달 지원기간이 만료되어 주거불안에 직면
- ⇒ (개선후) 최대 20년까지 거주기간 연장이 가능하여 안정적 연착륙 지원 가능

□ 국토교통부(장관 김현미)는 보호종료아동에 대한 주거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「기존주택 매입임대주택 업무처리지침」, 「기존주택 전세임대 업무처리지침」, 「소년소녀가정 등 전세주택 지원 업무처리지침」 개정안을 마련하여 2019년 6월 7일부터 2019년 6월 27일까지 행정예고를 실시한다.

- 그간, 보호종료아동은 사회적·경제적 여건으로 공적 주거 지원이 시급했으나 입주조건 까다롭고 거주 기간이 제한적이라 공공임대주택의 이용률이 상대적으로 낮았다.

* ('18년 아동복지시설퇴소자 매입·전세임대 입주현황) 매입임대 8호, 전세임대 915호

- 이번 개정은 이용과정에서 나타난 아동들의 불편사항을 개선하기 위해, 청년 매입(리모델링주택 포함)·전세임대주택 입주자격을 개선하고 지원기간을 확대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.

* 매입임대주택 : 공공주택사업자가 기존 주택을 매입·개보수 후 시세 50% 이하로 임대
전세임대주택 : 공공주택사업자가 기존 주택을 임차 후 재임대,
입주자는 임차보증금에 대해 연 1~2%의 이자를 부담

□ 업무처리지침 개정안의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.

① 입주자격 개선

	< 현재 >		< 앞으로 >
개선 내용	· (입주대상) 타지역 출신, 퇴소 5년 이내 무주택자 · (소득·자산기준) 세대소득 70% 이하, 영구임대 자산기준	➡	· (입주대상) 퇴소예정 및 퇴소 5년 이내 무주택자(지역기준 삭제) · (소득·자산기준) 삭제
기대 효과	· 부모의 소득·자산 조회 동의서를 받기 어려워 신청포기 사례 발생 · 소득·자산 검증에 2~3개월 소요		· 대상자 특성상 불필요한 기준 폐지 · 입주자격 검증기간 1주일로 단축

- 부모의 보호와 지원을 받지 못하는 대상자 특성*을 고려하여, 아동 복지시설 등에서 퇴소한 지 5년 이내인 보호종료아동에 대해서는

청년 매입임대주택에 적용 중인 지역 제한(타 지역 출신을 지원)과 부모의 동의서가 필요한 소득·자산 기준을 삭제한다.

* 경제적 여건 등 부모의 양육의사나 양육능력이 없는 경우 등

- 또한, 입주대상 해당 여부가 분명하지 않아 현장접수 담당자에 따라 자의적으로 해석되었던 아동복지시설 퇴소예정자와 가정위탁 보호종료아동도 청년 매입·전세임대주택 입주 대상자임을 명확히 한다.

② 입주자 선정방식 개선

	< 현재 >		< 앞으로 >
개선 내용	동 순위 내 경합시 추첨	→	보호종료아동은 우선지원
기대 효과	모집시기를 놓치거나, 추첨에서 탈락한 경우 다음 모집시까지 최소 3개월 대기		아동이 필요한 시기에 상시 신청·입주

- 주거지원이 시급한 보호종료아동에 대해 아동이 필요한 시기에 언제든지 신청하고 입주할 수 있도록 청년 매입·전세임대주택에 대해 우선 입주권을 부여한다.

- 그간, 보호종료아동은 다른 신청자와 동일하게 특정시기에 맞춰 입주 신청을 하고, 1순위 입주자격을 충족해도 신청자가 많으면 추첨방식으로 선정해 탈락하는 경우 다음 모집 시까지 최소 3개월간 대기해야 하는 등 신속한 지원에 어려움이 있었다.

③ 지원기간 확대

	< 현재 >		< 앞으로 >
개선 내용	6년 거주가능	→	재계약요건 충족 시 20년까지 연장
기대 효과	최대 6년 거주 후 퇴거해야 함		주거 불안 없이 사회진입 준비 가능

○ 현행 청년 매입·전세임대주택 지원기간은 최대 6년으로 보호종료 아동의 경우 사회 진입 전에 퇴거해야 하므로 지원기간이 다소 짧은 측면이 있었으나,

- 대상자가 희망하는 경우 재계약자격*을 충족하면 거주기간을 20년까지 연장할 수 있도록 한다.

*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의 105% 이하, 영구임대주택 입주자 자산기준 (자산 19,600만 원 이하, 자동차 2,499만 원 이하)

□ 국토교통부 공공주택지원과 최아름 과장은 “이번 업무처리지침 개정안이 시행되면 보호종료아동이 선택 가능한 주거 유형이 확대 됨과 동시에 필요한 시기에 즉시 입주하고 장기간 안정적 거주 가능해 질 것으로 기대된다”면서,

○ “앞으로도 보호종료아동의 상황과 여건을 고려한 실효성 있는 주거 지원방안을 적극 모색해 나가겠다.”고 밝혔다.

□ 개정안 전문은 국토교통부 누리집(<http://www.molit.go.kr>)의 “정보마당/법령정보/입법예고·행정예고”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,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 2019년 6월 27일까지 우편, 팩스 또는 국토교통부 누리집을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.

* 의견제출처 : (30103)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6동

국토교통부 공공주택지원과

전화 : 044-201-4479, 팩스 044-201-5572



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국토교통부 공공주택지원과 객인영 사무관(☎ 044-201-4479)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